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. 4. 11 선고 2016가단80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대한민국

변론 종결 2017. 3. 14

판결 선고 2017. 4. 1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6.9. 18. 접수 제13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는,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대한민국인 B의 아들이고, 위 B는 일제 치하에서 창씨 명을 C로 신고한 사실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6. 9. 18. 접수 제1395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마쳐지기 전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원고의 아버지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이 기재된 소유명의자인 C는 모두 전북 부안군 D에 주소를 두고 있던 동일한 사람인 사실(갑 제1호증, 제5호증의 2참조)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이 아닌 창씨 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인 B가 소유한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의 상속인으로서 소유자 또는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평온·공연하게 1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, 피고가 점유를 개시할당시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도우람

별지